제 1 부

언론조정현황

제1부 언론조정현황

1. 접수 유형별 현황

위원회는 2021년 총 4,278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이를 접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접수된 사건이 3,106건(7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자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신청 858건(20.1%), 우편 160건(3.7%), 방문 144건(3.4%), 구술[1] 10건(0.2%) 순이었다.

접수건 중 3,964건(92.7%)이 전자우편, 전자신청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신청이었으며, 방문, 구술 등 위원회 내방을 통해 신청한 사례는 154건(3.6%)에 그쳤다.

※ 2021년 신청된 중재사건은 없음

표 1 접수 유형별 조정사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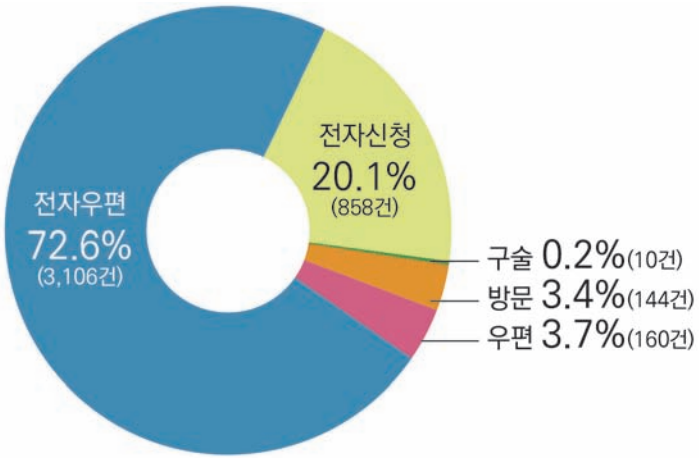

2.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서울중재부(8개 중재부)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2,969건으로 전체 조정사건(4,278건) 중 69.4%를 차지하였으며, 지역중재부(10개 중재부)는 1,309건을 접수·처리하여 30.6%의 조정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부별 평균 접수·처리건수를 살펴보면, 서울 1개 중재부는 평균 371건, 지역 1개 중재부는 평균 131건이었다.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가 서울 1개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른 구술 신청은 신청인이 위원회에 내방하여 조정신청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중재부 평균을 상회하는 390건(9.1%)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고, 이어 경남중재부 174건(4.1%), 대구중재부 153건(3.6%), 전북중재부 149건(3.5%) 등의 순으로 많았다.

표 2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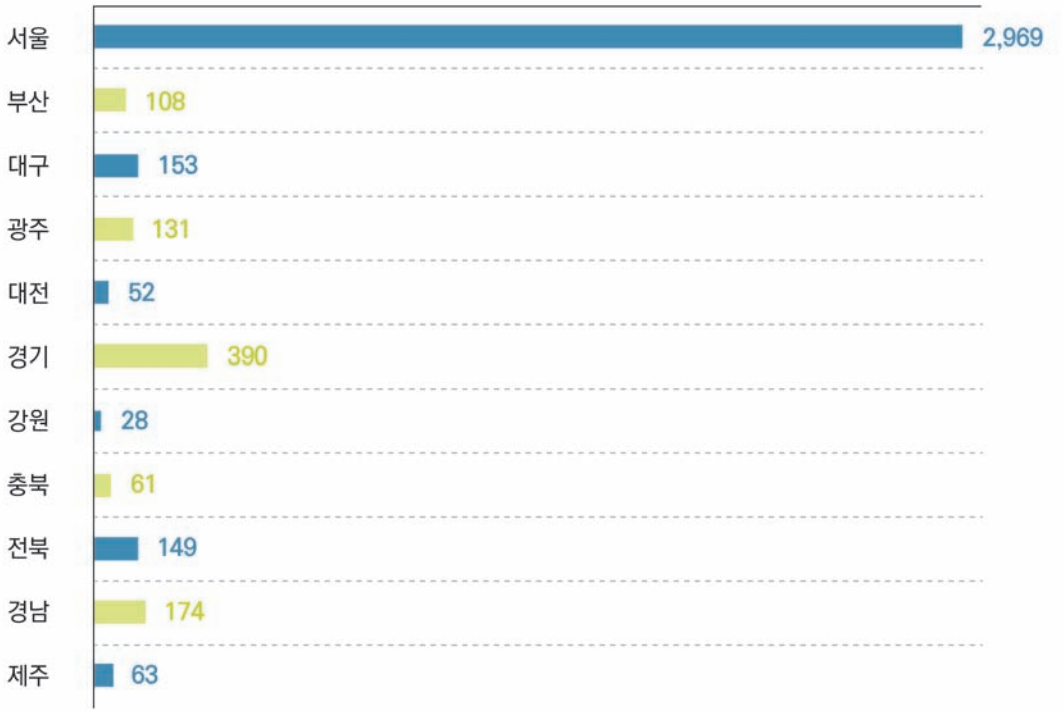

3. 조정사건 처리기간

조정사건 처리기간은 조정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종결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2021년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7.9일이었다. 서울중재부의 평균 처리기간은 18.7일, 지역중재부의 평균 처리기간은 16.1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서울중재부가 담당하는 조정사건수가 지역중재부보다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조정신청을 철회한 취하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기간은 19.6일로 다소 늘어났으며, 서울중재부는 20.2일, 지역중재부는 18.1일의 평균 처리기간이 소요되었다.

표 3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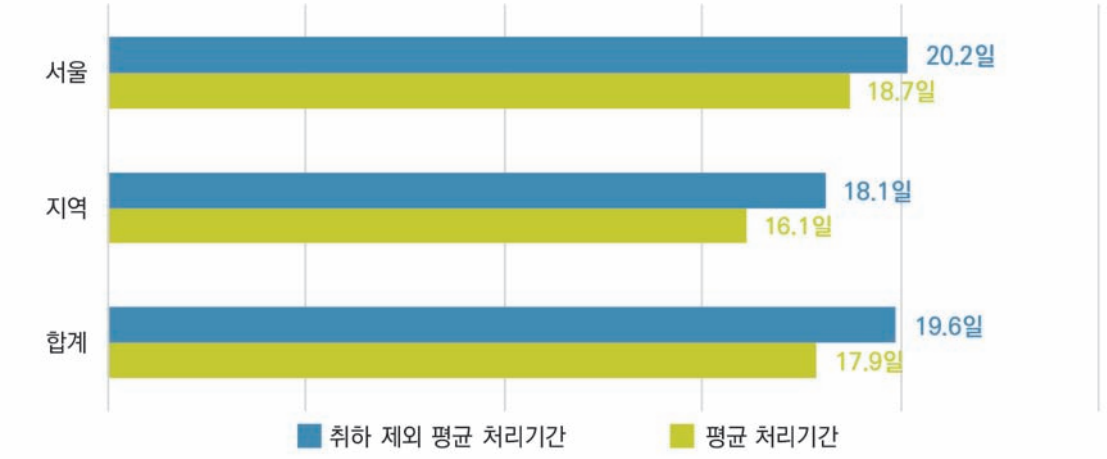

4.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832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청구 1,372건(32.1%), 반론보도청구 870건(20.3%), 추후보도청구 204건(4.8%) 순이었다.

전체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2]은 62.7%이었다. 청구권별로는 추후보도청구 피해구제율이 70.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정보도청구(64.4%), 반론보도청구(63.7%), 손해배상청구(58.4%) 순이었다.

표 4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1. 1. 1. ~ 2021.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정	1,832	561	66	36	(2)	373	(5)	236	32	373	155	64.4
반론	870	262	34	9	(2)	168	(2)	123	17	165	92	63.7
추후	204	35	1	2		27	(3)		44	74	21	70.6
손배	1,372	363	45	26		326	(6)	237	39	226	110	58.4
계	4,278	1,221	146	73	(4)	894	(16)	596	132	838	378	62.7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frac{\text{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times 100$

2)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조율을 우선하는 조정의 특성상 신청인의 본래 청구사항과 다른 보도 형태 등으로 합의되는 때도 있으며, 이 경우도 피해가 구제된 것으로 본다.

5.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가. 개요

조정사건을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이 2,569건으로 60.1%를 차지했고, 단체가 신청한 조정사건은 1,709건으로 39.9%였다.

개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60.4%로, 전체 피해구제율 62.7%보다 2.3%p 낮았다. 개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은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례가 680건(2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조정불성립결정 558건(21.7%),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 533건(20.7%) 등의 순이었다. 피해가 구제되어 신청인이 취하한 533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219건(41.1%), 열람차단 185건(34.7%), 기사수정 60건(11.3%) 등의 사유 순이었다.

단체가 신청한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전체 피해구제율 대비 3.5%p 높은 66.2%였다.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541건(31.7%), 조정불성립결정 336건(19.7%),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 305건(17.8%) 등의 순이었다. 취하로 종결된 단체 청구사건 중 305건은 피해가 구제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열람차단 115건(37.7%),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87건(28.5%), 기사수정 50건(16.4%), 당사자 간 화해 36건(11.8%) 등이었다.

표 5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1. 1. 1. ~ 2021. 12. 31.)

신청인 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개 인	2,569	680	81	38	(4)	558	(10)	315	89	533	275	60.4
단 체	1,709	541	65	35		336	(6)	281	43	305	103	66.2
계	4,278	1,221	146	73	(4)	894	(16)	596	132	838	378	62.7

나. 개인 직업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개인이 신청한 조정사건 2,569건을 신청인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교육자에 의한 신청이 323건(1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치인 289건(11.2%), 개인사업가 264건(10.3%), 회사원 242건(9.4%), 공무원 215건(8.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신청인이 직업을 밝히지 않았거나, 직업 분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된 건은 770건(30.0%)이었다.

개인 직업별 피해구제율은 공공기관장과 시민활동가가 신청한 조정사건이 100%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정건수가 각 16건과 10건으로 표본이 매우 적었다. 다음으로는 회사원(75.9%), 교육자(73.3%), 개인사업가(68.9%), 학생(68.4%) 순으로 피해구제율이 높았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직업군은 17.2%를 기록한 공무원이었는데,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취하로 종결된 사례가 조정사건 215건 중 119건(55.3%)을 차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표 6 개인 직업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1. 1. 1. ~ 2021. 12. 31.)

개인 신청인 직업 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치인	289	117	7	6		78		9	4	46	22	61.6
공공기관장	16	10	6									100.0
공무원	215	30	4	4		55				3	119	17.2
군인·경찰	85	22	8	1		24		4		22	4	64.2
전문직 종사자	50	12				19				12	7	48.0
문화예술인	35	6				10			6	11	2	58.6
종교인	69	15	4			39		8		1	2	32.8
회사원	242	62		4	(4)	43		18	21	88	6	75.9
언론인	57	17	6			13		1	6	9	5	64.0
교육자	323	117	12	5		57	(6)	3	5	96	28	73.3
개인사업가	264	77	10	6		50		27	12	68	14	68.9
연예인	71	10	3			21		9	3	25		64.4
학생	34	10				6		10	5	3		68.4
시민활동가	10	4						5		1		100.0
조합대표(협회장)	39	11				20		2		2	4	35.1
기타	770	160	21	12		123	(4)	219	27	146	62	63.2
계	2,569	680	81	38	(4)	558	(10)	315	89	533	275	60.4

다. 단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단체가 신청한 조정사건을 살펴보면, 일반기업체 신청 조정사건이 649건(38%)으로 여타 단체 대비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지방자치단체 158건(9.2%건), 조합 및 협회 140건(8.2%), 공공단체 105건(6.1%) 등의 순으로 조정사건이 많았다.

단체별 피해구제율은 국가기관(87.4%)과 노동조합(86.0%)이 타 단체 대비 월등히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육기관(71.7%), 일반기업체(69.9%), 종교단체(67.6%) 등의 순이었다. 언론사가 신청한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35.5%로 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언론사 조정사건 57건 중 42.3%에 해당하는 33건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표 7 단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1. 1. 1. ~ 2021. 12. 31.)

단체 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국가기관	87	57	14	2		9				5		87.4
지방자치단체	158	60	2	14		39		2		23	18	54.5
공공단체	105	23	5			21		2	1	38	15	64.7
정당	36	3				4		25		4		63.6
조합 및 협회	140	44		5		36		29		23	3	60.4
종교단체	73	18	25			12		2		5	11	67.6
일반기업체	649	173		8		88	(2)	167	40	134	39	69.9
언론사	78	22		4		33		16			3	35.5
교육기관	60	29	6	2		10				8	5	71.7
노동조합	95	43				13		2		37		86.0
기타 일반단체	228	69	13			71	(4)	36	2	28	9	60.0
계	1,709	541	65	35		336	(6)	281	43	305	103	66.2

6.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피신청인 매체 유형별 기준 조정사건 비율을 보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신청된 조정사건이 2,477건(57.9%)으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는 포털 및 방송사 닷컴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609건(14.2%), 방송 495건(11.6%), 신문 453건(10.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은 3,302건(77.2%)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7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잡지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 피해구제율은 71.4%로 매체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조정사건은 8건에 불과했다. 이어서 뉴스통신(69.8%), 인터넷신문(65.8%), 신문(65.7%) 등의 순으로 피해구제율이 높았다.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 3,302건 중 피해구제가 된 사례는 1,702건(51.5%)이었는데, 이때 정정보도 등을 통한 피해구제 외에도 인터넷에서 원 조정대상기사를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열람차단으로 피해구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열람차단은 아직 청구권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 중 열람차단으로 피해구제된 사례는 1,702건 중 426건(25%)으로 이미 중요한 피해구제 수단 중 하나로 자리했음이 확인됐다.

표 8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1. 1. 1. ~ 2021. 12. 31.)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신 문	453	188	26	10		117	(2)	21	4	65	22	65.7
방 송	495	153	23	10	(2)	139	(2)	53	5	51	61	52.9
잡 지	8	4	1	2				1				71.4
뉴스통신	216	33	10	3		26		34	23	68	19	69.8
인터넷신문	2,477	679	62	38		450	(10)	407	82	558	201	65.8
인터넷뉴스서비스	609	163	21	10	(2)	160	(2)	80	9	94	72	54.2
기 타	20	1	3			2			9	2	3	54.5
계	4,278	1,221	146	73	(4)	894	(16)	596	132	838	378	62.7

표 9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 중 열람차단으로 구제된 사건 현황 (2021. 1. 1. ~ 2021. 12. 31.)

인터넷 매체 대상 청구건수	인터넷 매체 대상 피해구제 건수 (A)	열람차단으로 구제된 인터넷 매체 대상 청구건수 (B)	비율 (B)/(A)
3,302	1,702	426	25.0%

7.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조정사건 중 4,123건(96.4%)이 명예훼손 관련이었으며, 초상권·음성권·성명권·사생활 침해 등 기타 인격권 침해가 98건(2.3%), 그 밖에 재산상손해 및 기타 조정사건은 57건(1.3%)이었다.

명예훼손을 제외한 기타 인격권 중 음성권, 사생활 침해 관련 조정사건의 경우, 조정사건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100%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조정사건은 89.4%, 성명권 침해로 인한 조정사건은 71.4%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재산상손해에 따른 조정사건 피해구제율은 61.5%였다.

조정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피해구제율은 62.0%였다. 사건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정성립이 1,177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조정불성립결정 882건(21.4%),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 797건(19.3%) 등의 순이었다.

표 10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1. 1. 1. ~ 2021. 12. 31.)

침해 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4,123	1,177	141	73	(4)	882	(16)	557	123	797	373	62.0
초상권 침해	66	19	5					11	8	18	5	89.4
음성권 침해	13	13										100.0
성명권 침해	7	2				2				3		71.4
사생활 침해	12	6								6		100.0
재산상 손해	47	3				10		20	1	13		61.5
기타	10	1						8		1		100.0
계	4,278	1,221	146	73	(4)	894	(16)	596	132	838	378	62.7

※ 침해유형은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통계는 신청인이 주된 침해로 선택한 유형 기준으로 작성

8. 직권조정결정을 통한 조정사건 처리결과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내린 조정사건은 219건이었다. 서울중재부가 141건(64.4%), 지역중재부가 78건(35.6%)에 대해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서울중재부와 지역중재부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비율(서울 69.4%, 지역 30.6%)과 유사하였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동의된 조정사건은 146건(66.7%), 이의신청된 조정사건은 73건(33.3%)으로, 3건 중 1건의 비율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의 주체는 신청인이 32건(43.8%), 피신청인이 28건(38.4%)이었고, 양당사자가 모두 이의신청한 조정사건은 13건(17.8%)이었다.

표 11 직권조정결정 처리결과 (2021. 1. 1. ~ 2021. 12. 31.)

구분	직권조정결정 처리결과					
	건수	동의	이의			
			신청인 이의신청	피신청인 이의신청	양당사자 이의신청	소계
서울	141	98	14	16	13	43
지역	78	48	18	12		30
계	219	146	32	28	13	73

9. 기각 및 각하 사유

기각된 596건의 조정사건 중 절반 이상(347건, 58.2%)은 중재부가 신청인과 조정대상보도 사이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였다. 그 밖에는 보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132건, 22.1%),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보도내용의 본질적 내용이 아닌 지엽말단적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 정도가 미미한 경우(37건, 6.2%),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표명에 대한 조정신청(32건, 5.4%) 등의 사유가 주를 이었다.

각하로 종결된 사건은 총 132건이었는데, 언론중재법상 신청 가능한 기간을 넘겨 접수된 사건이(71건, 53.8%)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사유로는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 매체가 아닌 경우(10건, 7.6%), 신청서가 미비하거나 신청인이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각 3건, 2.3%) 등이었다.

표 12 기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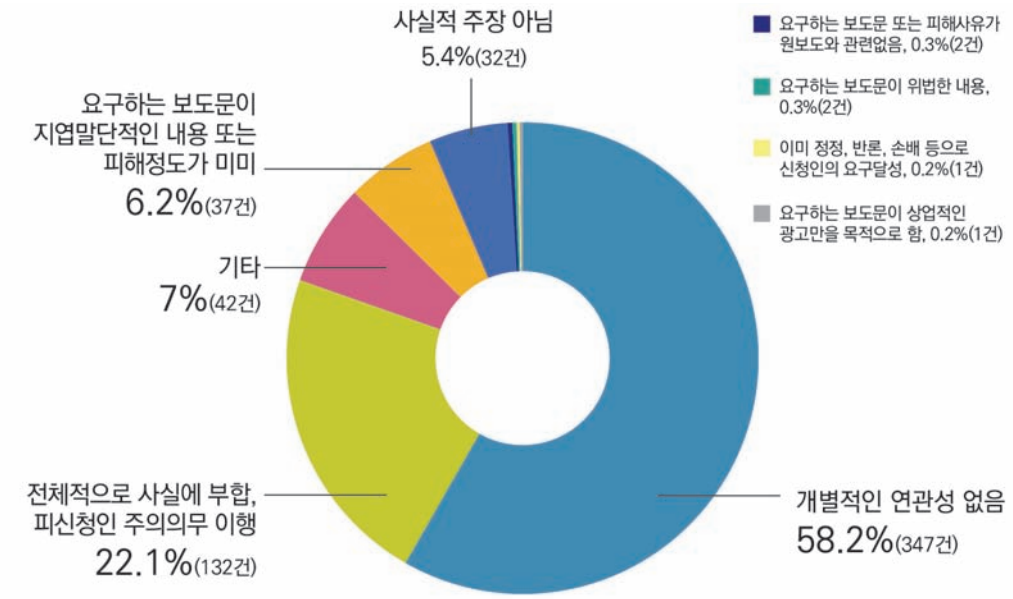

표 13 각하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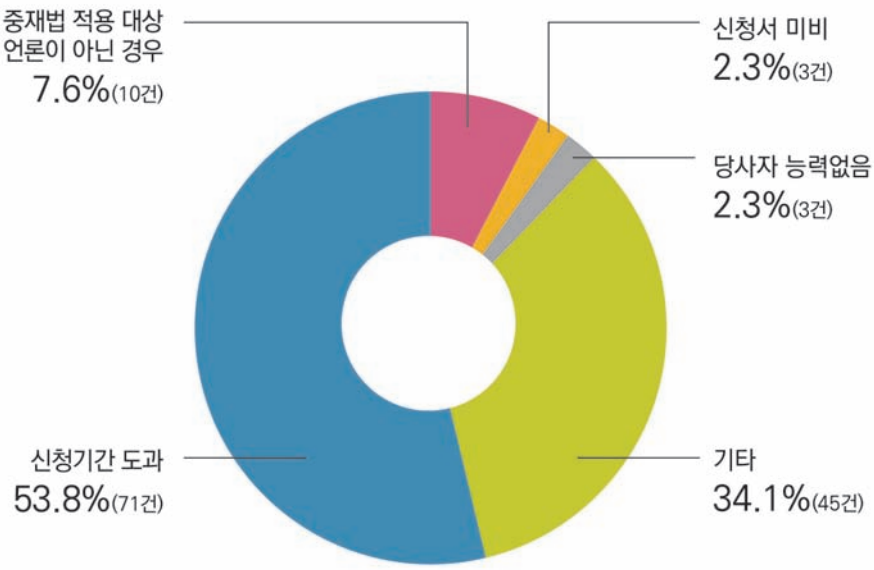

10. 피해구제보도문 게재지면

조정성립 등에 따라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된 사례는 1,549건이었다. 문제가 된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 또는 프로그램에 게재·방송된 사례가 1,424건(91.9%)으로, 피해구제보도문을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 채널에 게재·방송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의 취지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보도와 다른 별도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게재·방송된 사례는 113건(7.3%), 언론사의 자체 정정·반론보도 지면이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게재·방송된 사례는 10건(0.6%)이었다. 기타 2건(0.1%)은 언론사가 유튜브에 올린 원 보도 영상의 공지사항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경우였다.

표 14 **피해구제보도문 게재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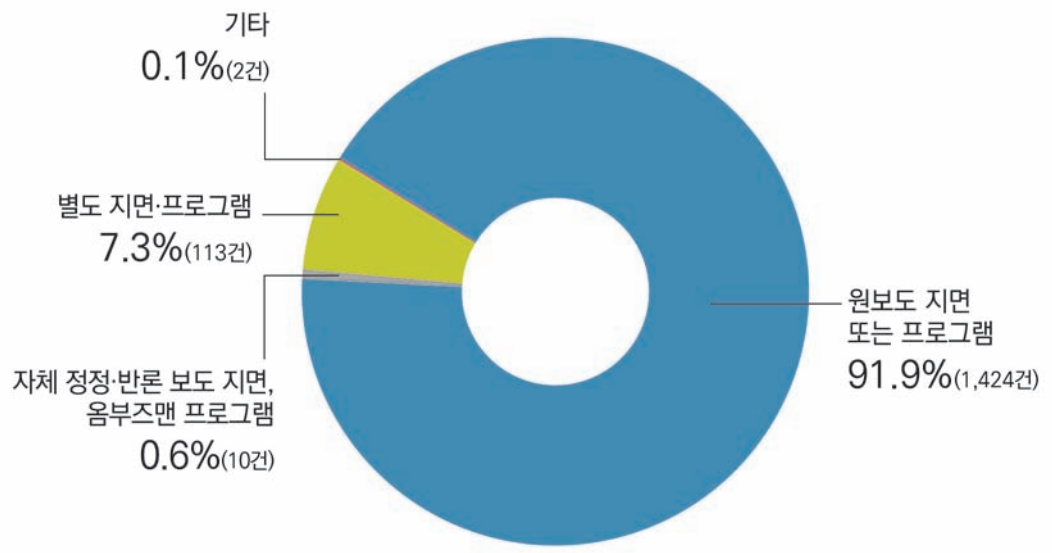

11. 손해배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손해배상을 신청한 조정사건 1,372건 가운데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74건(5.4%)이었다.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10원부터 최고 50억 원까지 분포하는 등 편차가 컸다. 평균 청구액은 약 7,500만 원이었고, 중앙액은 1,500만 원이었다.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등으로 금전배상이 인용된 액수는 최저 6만 원, 최고 1,500만 원이었다. 평균 조정액은 약 200만 원이었으며, 중앙액은 100만 원이었다.

손해배상이 인용된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53건(71.6%)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11건(14.9%), 음성권 및 사생활 침해가 각 4건(각 5.4%), 재산상 손해 및 기타가 각 1건(각 1.4%)으로 집계됐다. 2021년 최고액인 1,500만원이 지급된 조정사건은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건이었다.

표 15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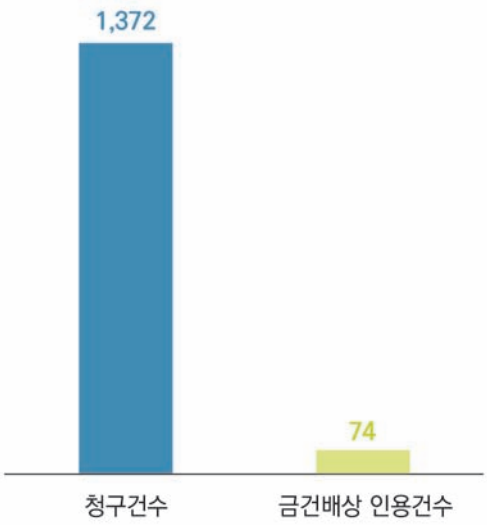

표 16 손해배상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21. 1. 1. ~ 2021. 12. 31. / 단위: 원)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청구액	10	5,000,000,000	75,435,806	15,000,000
조정액	60,000	15,000,000	2,085,000	1,000,000

표 17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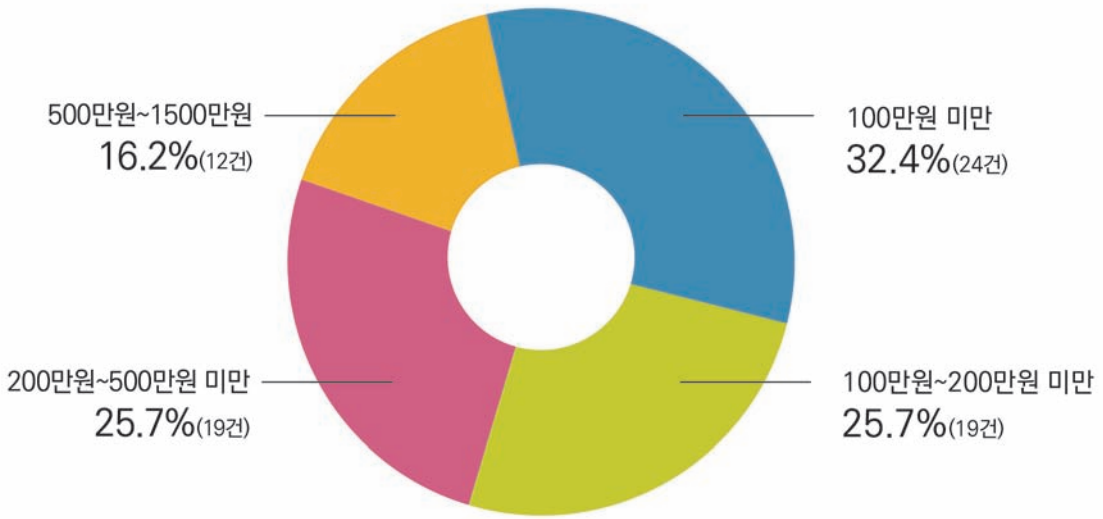

표 18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1. 1. 1. ~ 2021. 12. 31. / 단위: 원)

조정액 / 침해유형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53	300,000	15,000,000	2,202,381	1,000,000	500,000
초상권 침해	11	500,000	4,000,000	1,966,667	1,200,000	1,000,000
음성권 침해	4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사생활 침해	4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재산상 손해	1	60,000	60,000	60,000	60,000	
기타	1	500,000	500,000	500,000	500,000	